

콩나물의 문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

각종 공해로 우리주위 환경은 오염되어가고 있다. 공기도. 수질도. 토양도 –

따라서 우리가 먹는 농산물도 적당한 농약 방제를 하여야 재배가 가능하다.

쌀도, 과일도, 야채도 그리고 콩에도, 간혹 콩나물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었다고하여 문제가 일고 있다.

그 콩나물을 재배한 업자는 악덕 업자인가? 아니면 어쩔수 없는 일이 있는가?

좌우간 농약성분이 검출되었다하여 당국으로부터 고발당하고 있다.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루속히 여기에 따른 근본대책을 세워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

1. 콩나물의 법적 위치는 무엇인가?

난 2월 초순에 경기도의 모 업자가 본 두채정지 보사를 찾아왔다. 그는 자기의 콩나물에서 농약의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경찰서에 불려가서 진술을 받고 오는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농약에 관하여 자료를 구할 수 있느냐고 찾아온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농약성분이 얼마나 검출되었느냐고 그에게 물었더니 0.3PPM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확실히 알겠으나 농약의 이름이 처음듣는 말이라 뭐라고 하는데 기억이 잘나지는 않으나 두글자의 이름이라는 것이다.

도대체 이름도 모르면서 어떻게 썼길래 검출이 되었느냐고 되물었더니 그사람은 정색을 하면서 절대로 농약을 쓰지 않았다며 기가 막힌다는 것이다.

그말이 사실이라면 분명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농약을 쓰지도 않았는데 농약의 성분이 검출된다는 말인가?

그래서 어떻게 조사를 받았느냐고 물었더니 검출된 결과가 말하는 것이라며 구속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는 모양으로, 농약의 잔류기준치가 얼마인지? 또 어느 정도가 어떻게 해로운지? 담당자가 다른 동료들에게 물어보았으나 확실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지, 오히려 자기에게 물어보더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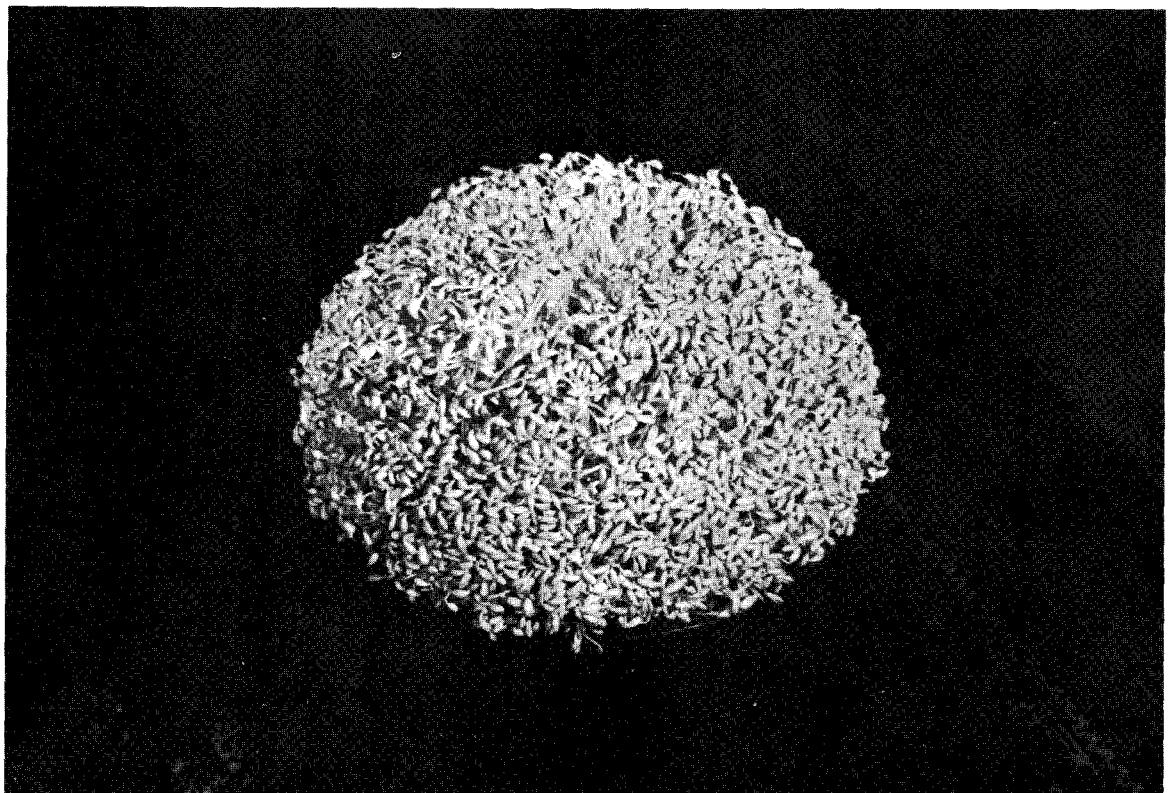
그러나 자기도 전혀 아는게 없어서 혹시 두채정 보사에 가면 농약에 그 자료를 구하여 내일 오전에 다시 출두하라고 하여 왔다는 것이다. 그러니 자료가 있으면 좀 줄 수 없겠느냐고 하소연을 하는데 이것이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무실에 자료가 있을리가 없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을 비롯하여 그 시행령이나 또 그 시행규칙이나, 그리고 식품의 규격이나 기준이나 아무리 다 찾아보아도 콩나물에 관하여는 단 한글자도 써어있지 않으니 도대체 무엇이 자료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보건사회부에서 술하게 쏟아져 나오는 지침이나,령이나, 고시같은 것을 다 훑어보면 기본 식품관리요령에서 콩나물은 채소류이고 그중에

서도 엽채류에 속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또 다른 지침서는 잠정규정으로 콩나물에서 수은이 0.1PPM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고 쓰여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사람의 콩나물에서 검출된 성분이 수은은 아닌 모양이며, 더구나 수은계 농약이 이땅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린것이 이미 10여년이나 지났으므로 그 잠정규정에 해당사항은 분명 아닐것이고 보면 도대체 콩나물은 어느 법규에 의하여 처리할 수가 있으며 법률상의 위치는 어디인가? 검사를 하기 위하여, 콩나물을 수거할 때 검체의 규격은 무엇이며, 또한 어느성분을 검출하며 잔류량의 기준치가 무엇이며, 또 몇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글귀가 어느 법에도 없으니 명쾌한 자료를 줄 수가 없는 것이다.



2. 유해물질 첨가의 한계

그러나 법률에 있건 없건 콩나물은 식품위생법으로 처벌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수거의 기준이나 잔류량의 기준이 있건 없건 지금도 전국의 곳곳에서 수거를 하며 검사를 하고, 또 처벌을 한다.

그것은 사람이 먹는 식품에 유해물질인 농약을 첨가하였다는 행위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이다.

넓은 의미로 보아서 콩나물은 식품임에는 틀림이 없다. 물론 쌀도, 배추도, 오이도, 사람이 먹기 위하여 짓는 모든 농산물이 식품이 된다. 그리고 이 모든 농산물은 농약을 사용하여야만 사람이 먹을 수 있으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병충해에 거의 빼앗겨 버리고 사람의 입에 들어올 것이 별로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농약이 발달되고, 농약의 발달이 곧 농업의 발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 농약자체가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이다. 그렇다면 농사를 짓는 모든 농민이 사람이 먹는 식품에 유해물질을 첨가하는 악덕농삿꾼들이 아닌가? 콩나물은 재배기일이 짧아서 잔류의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면 내일 출하하는 상추에 오이에, 딸기에, 싱싱하라고 농약을 마구 뿌려대는 농민들은 얼마나 악덕업자들인가?

그런데도 아무도 그것을 탓하는 사람은 없다. 언론들도 그것을 농약배추, 농약오이, 농약딸기라고 매도하지도 않는다. 소비자들도 그것이 인체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오히려 그것이 당연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믿는다. 아무리 같은 성분의 농약이라고 해도 오직 콩나물에 있는것만이 인체에 해롭고 다른 채소류에서는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한계가 있는 모양이다. 따라서 법률적용의 형평의 원칙에도 한계가 있으며, 콩나물 재배업자만이 악덕업자가 되고 농약콩나물이 되는 것이다.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른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콩나물을 재배하는 당사자도 모르고, 또 이것을 수

거검사하는 담당자도 모르며, 또 이것을 법적으로 처리해야하는 사직당국자도 모르면서도 그렇게 따라갈 수 밖에 없는 모양이다.

3. 그래도 콩나물은 채소류이며, 가장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두채정보사 사무실까지 찾아온 그 업자에게 실망을 줄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구나 자료를 가지고 내일 다시 경찰서에 출두하여야 되지 않겠는가?

먼저 1984년2월22일자 보건사회부로부터 모업자가 질의한 답변의 회시공문을 내용았다 거기의 답변에는 “콩나물은 가공식품이 아님”이라고 쓰여 있으며 다음에는 경제기획원에서 발행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제시하게 된다. 분류번호11116호 시설작물 생산업은 베섯, 콩나물등과 같이 시설물에 의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보건사회부 고시 기본식품관리요령도 이미 설명한바 있다.

또한 모업자가 콩나물의 규격 및 기준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질의에 1986년12월24일자로 보건사회부에서 답변한 회시공문에는 보사부 고시 86-5호에 의하여 자연식품등의 성분규격으로 「콩나물의 수은함량이 0.1PPM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이외에는 현단계에서 검토한바도 없다고 되어있다. 즉, 콩나물에서는 농약 잔류량의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고 또 해야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농약의 잔류량의 검사는 계속되고 1988년3월에는 최대의 수난을 겪게 되며, 다시 모업자가 농림수산부에 질의를 하게 된다.

콩나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은 무엇이 있으며, 다른 농약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1988년4월22일 농림수산부의 답변을 요약하면 인체에 해롭지 않은 「인돌비」 이외에는 쓸 수 없다고 지적하고 “농약의 안전사용지도를 관련기관 및 각 시·도의 협조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콩나물 재배업자 스스로의 협조 없이는 농약을 이용한 부패 예방제 사용금지를 완벽히 수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업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만일 일반농약을 콩나물 재배에 사용할 시에는 농약관리법 18조에 의거 처벌하도록 고발조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계기관 및 각 시·도에 「농약의 안전사용위반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보아 농림수산부의 견해는 보건사회부의 견해와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즉 농림수산부는 종자소독약이기는 하나, 콩나물에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안전사용기준의 위반이 될 수는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막연하게 식품위생법으로 처리하는 보사부와는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한 콩나물에 대하여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치가 있는지의 질문에 농림수산부에서는 「그것은 환경청 소관」이라고 답변하고 있다.(1988년6월20일자)

그러나 환경청에서 고시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을 보면 콩나물에 관한 것은 나와있지 않다. 지금 현재 콩나물에서 검출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캡탄」과 볍시, 콩, 오이 등의 「호마이」 또는 「톱신엠」이라는 상표를 가진 「카바메이트」제통의 「치오판네이트 메릴」이다. 이것을 곡물류에서나 다른 채소류에서는 각각 5PPM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 업자는 0.3PPM이 검출되었다고 사직당국에 고발된 것이다. 다른 농산물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준치의 $\frac{1}{16}$ 에도 못미치는 함량이 검출되었다고 고발이 되었다면 다른 농산물은 인체에 해롭지 않더라도 콩나물에서만 해롭다는 모순된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닌가? 분명히 제도상에 문제 가 있다.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농산물은 농약의 잔류검사를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가 함유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여하튼 콩나물에서는 극히 일부에서 검출되는 잔류량마저도 다른 농수산물의 허용기준치에 훨씬 못미치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다.

4.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문 제는 제도상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다. 콩나물을 병원균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종자소독을 했다는 것이 죄가 되며 아무리 검출량이 미량이라 하더라도 막연히 인체에 해로울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처벌이 되고 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그 사람은 절대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다. 그 사람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검출이 되었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1986년 19명의 업자가 무더기로 구속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그 당시에 양천구의 김모씨와 도봉구의 김모씨는 지금도 농약을 쓰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나왔다고 하소연한다. 조사를 받을 때 안썼다고 주장을 했다가 곤욕만 치렀다고도 한다. 그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분명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 검사과정에서 하자가 있는것인가? 아니면 원료콩에서도 나오고 있는것인가?

물론 콩농사를 지을 때도 농약을 사용할 것이다. 그리하여 종자인 콩에 농약의 성분이 잔류되고 이것을 콩나물로 길렀을 때도 검출이 된다면 이것은

보통 큰일이 아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농약을 사용한 것을 콩나물 재배업자들이 딥터기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 그렇다고 콩을 검사하는 기관도 없고, 그것을 탓하는 사람도 없으니 애매한 콩나물과 콩나물업자만 수난을 겪어야 한다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콩나물에 농약을 마구 써야 된다는 업자는 한사람도 없다. 그러나 부패를 방지하고 병원균을 구제 할 수 있는 약제가 인체에 해롭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되고, 또 콩나물도 다른 농산물처럼 잔류의 허용기준치를 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라리 식품위생법으로 적용하여 허가대상의 품목으로 정하고 식품으로써 규격이나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처럼 막연하게 수거검사의 단속이 계속된다면 농약을 썼던 안썼던 언제 자기의 콩나물에서 농약이 검출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콩나물을 재배한 것이 죄가 되어 처벌을 받을 날이 올련지도 모른다. 그리고 세상에서 지탄받는 악덕업자가 되고 말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이 민주화 사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연 언제까지 지속되어 갈것인가? ♦

“**월간두채**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콩나물 재배용기(시루)의 선구자

콩나물 부패방지
콩나물 성장촉진
구입 가격 저렴

익성산업

대구시 북구 노원 3 가 466-1
☎ 053) 33-3666, 33-4456